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5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5.

발 의 자 : 이성권 · 박정훈 · 이만희
최은석 · 김기웅 · 김용태
백종헌 · 정연욱 · 최보운
안철수 · 강명구 · 이인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, 이주민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지만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사회통합과 공동체 구성원의 포용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또한,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, 교육, 환경, 문화 등 다양한 공익영역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여러 부처나 기관에서 유사 중복 프로그램이 운영되거나 관리되고 있어 사업 간 협력 및 자원 공유, 성과 통합 관리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자원봉사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진흥 정책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 또는 사람으로 확대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

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 2조, 제19조, 19조의2 및 제19조의3).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자원봉사활동 기본법”을 “자원봉사기본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의”를 “개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국민은”을 “사람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) ①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
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3(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

·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
· 단체에 필요한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, 제공받은 목적의
범위에서 이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
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
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
사통합정보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
· 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
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
있다.

⑤ 그 밖에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나목 중 “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”을 “「자원봉사기본

법」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자원봉사활동 기본법</u>	<u>자원봉사기본법</u>
제2조(기본 방향)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.	제2조(기본 방향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자원봉사활동은 <u>국민의</u>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	1. ----- <u>개인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모든 <u>국민은</u> 나이, 성별, 장애, 지역,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	3. ----- <u>사람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(생략) ② <u>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</u>	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

<신 설>

제19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) ①

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으로 기
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
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
다.

② 자원봉사센터는 제1항에 따
라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
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및
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
령령으로 정한다.

제19조의3(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
템의 구축·운영) ①

행정안전
부장은 자원봉사활동 관련
자료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
리하고 자원봉사활동 관련 업
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
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
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은 제1항에
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
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
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
및 관련 기관·단체에 필요한
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,
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

를 수집·보유·이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·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과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그 밖에 자원봉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